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9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신동욱 · 강대식 · 박상웅
박준태 · 권성동 · 추경호
서지영 · 송언석 · 조정훈
유상범 · 곽규택 · 김재섭
송석준 · 나경원 · 조배숙
김도읍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2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2제1항 중 “가진”을 “집중투표 청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으로 한다.

제542조의6제9항 중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을 “제6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2104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7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82條의2(集中投票) ① 2人 이상의 理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3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第382條의2(集中投票) ① ----- ----- ----- ----- ----- -----<u>집중투표</u> <u>청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u> <u>보유한</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u>제6항까지</u>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⑩ (생략)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제6항까지</u>----- ----- ----- ----- ----- -----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44호 상법 일부개정법	법률 제21044호 상법 일부개정법

를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u>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u> ③ <u>제2항의</u>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를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u>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	---